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한국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도전정신을 가진 사회의 일원을 육성하며, 창업 초기 자금 지원을 부여하고 창업지원과 의료지원사업을 하며 교육, 문화 발전에 공이 큰 자를 포상함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사회 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글로벌벤처센터”라 한다.

제 3 조

(사업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창업 기업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업
2.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멘토링, 법률자문, 마케팅지원)
3.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기업 투자지원사업
4.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산학장학생, 과학기술인 장학금 지원사업
5. 벤처기업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사무실 인프라지원사업
6.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7. 벤처기업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8. 벤처기업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9. 벤처기업을 위한 직장인 상담 사역
10. 벤처기업과 청년취업을 위한 취업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취업 장려금)
11. 장학금 재원을 위한 임대수익사업
12. 개인, 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연구비 및 장학금의 수탁관리
13. 과학기술연구소에 대한 지원
14. 창업기업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
15.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5 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 4 조 각호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

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학금 재원의 마련을 위한 임대 수익사업이나 창업초기자본을 지원하는 자금지원 사업, 의료지원사업, 법률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빈부의 귀천 등의 사회적인 지위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을 별지목록 1과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 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를 예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관리)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6 조 제3항에 규정한 직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이하

2. 감사 1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공공서식 한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③ 이 법인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① 제 4 조 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 조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과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와 의사는 출석이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와 의결은 출석이사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 조

(의결제소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9 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4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년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2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제 35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

공공서식 한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시소재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 37 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 기
이 사 장	강 회 승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미도 205-406	
이 사	이 하 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8-23 명철빌딩 401호	
이 사	윤 종 윤	서울 강남 대치 선경A 3-803	
이 사	서 성 렬	서울 관악구 봉천동 41-258 카후나빌아파트 601호	
이 사	심 영 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53	
감 사	김 정 연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0-2	관리국장재직시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년 3월 15일

